

『**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5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문화상 심사위원회 회의운영 관련규정 중 의결정족수 관련 모순된 규정에 대한 개정 및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종전의 “회의는...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”는 다수결의 원칙 및 1인 1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“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함 (안 제7조제2항)

나.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(안 전체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 중 “각호 규정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단서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다음 각 호의 1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상부분”을 “시상부문”으로 하고, “인정되는 자로서”와 “거주하고 있는 자” 및 “수상경력이 없는 자”를 각각 “인정되는 사람으로”와 “거주하고 있는 사람” 및 “수상경력이 없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적이 있는 자로서”와 “수상경력이 없는 자”를 각각 “공적이 있는 사람으로”와 “수상경력이 없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각1인” 및 “35인이내”와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1인” 및 “5인”을 각각 “각각 1명” 및 “35명 이내”와 “1명” 및 “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갖춘 자로서”를 “갖춘 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”를 “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4항 규정에 의거”

를 “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리한다”를 “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위원장이 결정한다”를 “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각회의”를 “각 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범위 내에서의”를 “범위에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각각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문화예술담당업무사무관”을 “문화예술 업무 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시상부문 및 인원) ①(생략)	제2조(시상부문 및 인원) ①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호 규정의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은 <u>1인</u> 으로 하되,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<u>2인</u> 까지 시상할 수 있다.	② 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</u> <u>명</u> -----
제3조(수상후보자의 요건) 제2조의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<u>다음 각 호 1의</u>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	제3조(수상후보자의 요건) ----- ----- <u>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하나의</u> ----- -----
1. <u>시상부분에 공적이 뛰어나 향토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서</u>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<u>거주하고 있는 자</u> 중 시·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자	1. <u>시상부분</u> ----- ----- ----- <u>인정되는 사람으로</u> --- ----- ----- <u>거주하고 있는 사람</u> ----- <u>수상경력이 없는 사람</u>
2. 문화예술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<u>공적이 있는 자로서</u>	2. ----- ----- ----- <u>공적이 있는 사람으로</u>

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
고 시·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
수상경력이 없는 자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
략)
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
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35인이
내로 구성한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항 규
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
위원으로 하되, 분과위원회는 각
부문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
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덕망이
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
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
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
고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
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⑥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
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
에 자동 해촉된다.

제6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각 위
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

수상경력이 없는 사람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- 각각 1명----- 35명 이
내-----

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항 규
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
위원으로 하되, 분과위원회는 각
부문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
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-----

갖춘 사람으로 -----

⑤ -----

--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
과위원 중에서 -----

⑥ 제4항에 따라 -----

제6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----
----- 위

무를 통리한다.

제7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회의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 (위원회 기능)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(생략)

2. 조례와 규칙 범위 내에서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
3.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(생략)

1. (생략)

2.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,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.

제12조 (수당 등) 시 소속 공무원

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 (위원회 기능) ① -----

----- 각 호의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범위에서의

3. ----- 회의에
부치는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회의에 부치는 --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문화예술 업무 담당사무
관이 된다.

제12조(수당 등) 인천광역시 소속

<u>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제13조 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 필요한 -----</u> -----
---	---

[별첨 1]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☐ 헌법 - 제49조 ☐ 지방자치법 - 제64조(의결정족수) 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- 제61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수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헌법】

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64조(의결정족수) ① <생략>

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【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】

제61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수) ① <생략>

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